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3. 3. 29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3월 22일,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3년 3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종호)

가.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이 '93. 1. 1부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어 동법에 근거한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에 관한조례를 폐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청소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함
-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괄하며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 본위원회 산하 각종 청소년지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함.

3. 검토의견

청소년기본법이 '91. 12. 31(법률 제4477호) 제정되어 대통령령 제1381호('92. 12. 31)에 의한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93. 1. 1부로 시행됨과 동시에 종전의 청소년육성법령은 폐지되었으며 본 제정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시행을 일정 기간동안 유보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칙 제3항은 본 조례 제정 시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습

5. 토론 요지 : 없 습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3월 29일, 이현택 위원

나. 수정이유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야 하므로 부칙 제3항 "경과 조치"는 삭제.

다. 수정 주요 골자

부칙 제3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의 경과조치를 삭제

8. 심사결과 : 수정 의결(재석위원 12명 전원찬성)

9. 불 임 : 조례안 대비표 1 부.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폐지조례)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 <u>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조례의</u> <u>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u> <u>지방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u> <u>회로 본다.</u>		③ (삭 제)		